



안전보건



챙기셨나요? 위기탈출 애플리케이션



사고포착

실시간 재해 정보와
대처 방안 제공



응급조치

일터 및 생활 속 응급조치에 관한
기본 지식과 대처방법 제공



기초안전 보건교육

스마트폰으로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확인



다국어회화

일터 및 일상생활에 유용한
10개 외국어 회화 제공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른
안전건강 대처 요령 제공



체조송

체조송과 바른 자세송
스트레칭 동영상 제공



지식총전소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월간 안전보건

'월간 안전보건'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



MSDS 요약정보

불산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응급조치 요령 제공

2013-교육미디어-328





「이미용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란?



KOSHA GUIDE와는 달리 작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만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이미용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서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 · 사 · 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산업의학 · 간호 · 위생 · 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여 2012년도에 9개, 2013년도에 10개의 주제와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개발 직종 | ① 환경미화원 ② 병원청소원 ③ 요양보호사(시설요양원) ④ 간호사 ⑤ 택시운전원 ⑥ 건물청소원 ⑦ 물류종사원(창고업종) ⑧ 매장판매 종사자 ⑨ 사무종사자(IT)

| 2013년 개발 직종 및 주제 | ① 콜센터 종사원 ② 이미용 종사원 ③ 도장공 ④ 용접원 ⑤ 차량정비원 ⑥ 항만하역 종사원 ⑦ 오페수시설 종사원 ⑧ 야간 및 교대작업 ⑨ 근로자 우울증 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미용 종사원’의 경우, 오래 서서 일을 하면서 발의 피로 · 부종 및 하지정맥류,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생길 수 있고,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적 식사 및 불결한 환경 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이미용 종사원’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용 종사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장을 방문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한 후,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 자료 중 본 연구팀에서 ‘이미용 종사원’의 자료를 별도로 추출하여 재분류한 결과 및 대표적인 산업재해 발생 사례를 사진(삽화) 등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KOSHA GUIDE 등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사·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본 책자는 주요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이며, 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종합본’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장의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및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가이드라인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연구팀 : 연구책임자(가톨릭대 정혜선 교수), 공동 연구원(가톨릭대 이세훈 교수, 가톨릭대 김형아 교수, 계요병원 박주연 박사, 고려대 김영수 교수, 고려대 추진아 교수, 경북대 최은숙 교수, 가톨릭대 이종은 교수, 혜천대 서기순 교수, 중부대 권영숙 교수, 경상대 하영미 교수)

목차 Contents

01 배경

1. 사회적 관심 증가	08
2.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09
3.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	10

02 일반적 현황

1. 이미용 종사원의 정의	11
2. 이미용 종사원의 근무현황 및 특성	12
3. 관련법령	13
4. 안전보건 실태	16

03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1.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17
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18
3. 산업재해 사례	19



04 이미용 종사원의 유해·위험요인

1. 작업환경 요인	20
2. 작업조건 요인	22
3. 건강문제 요인	24
4. 사고관련 요인	27



05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1. 작업환경 관리	29
2. 작업조건 관리	32
3. 건강문제 관리	37
4. 사고요인 관리	40



06 부록

부록1. 「이미용 종사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45
부록2. 「이미용 종사원」 관련 KOSHA GUIDE	46
부록3. 「이미용 종사원」 유관단체 명단	47

01. 배경

1. 사회적 관심증가

- 최근 이미용 업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의 종사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두발미용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126,358명,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24,301명으로 나타남(2011년 기준)
- ※ 통계청(2012). 「2011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 이미용 종사원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발의 피로 · 부종 · 통증 및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고,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적 식사 및 불결한 근무환경(발생 비듬, 미세 머리카락, 세균 노출 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 헤어분야는 51.4%, 네일 분야는 64.6%인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 김인아 등(2012).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용 종사원의 건강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미용 종사원의
건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손 습진 가볍게 여기면 우울 · 불면 등 삶의 질 떨어져	헬스조선 2013. 6. 19.
이 · 미용업 노동자 20만 시대. 화학물질 노출 '비상'	이데일리뉴스 2011. 12. 9.
포름알데히드 덮힌 네일숍 · 피부미용실	서울경제 2010. 10. 15.
女미용사 하이힐 착용 금지령, 게다가	중앙일보 2012. 4. 11.
하이힐 의무착용. 여성들이 병들어 간다	헤럴드경제 2012. 11. 19.

📷 1 서울신문 (2008-3-28)



미용사, 다른 직업 비해 암 걸릴 확률 높다

2 국민일보 (2013-3-15)



피부 질환 미용사들 장시간 화학약품에 노출

2.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 본 연구팀에서 분석한 이미웅 종사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건수는 연간 약 52~60건임¹⁾
※ 2010년 60건 → 2011년 54건 → 2012년 52건
- 주요 산재 발생형태는 넘어짐, 동물상해, 절단 · 베임 · 찢림, 부딪힘 등의 사고와 작업관련성질환 등임

1)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산업재해 결과는 업종별 현황만 발표되기 때문에 직종별 산업재해 현황을 알 수 없음.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원자료를 제공받아 이미웅 종사원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음

이미용 종사원의
발생형태별 산업재해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넘어짐	21 (35.0)	17 (31.5)	18 (34.6)
동물상해	9 (15.0)	8 (14.8)	11 (21.2)
절단 · 베임 · 찢림	10 (16.7)	7 (13.0)	5 (9.6)
부딪힘	4 (6.7)	2 (3.7)	4 (7.7)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5 (8.3)	3 (5.6)	1 (1.9)
맞음	2 (3.3)	2 (3.7)	3 (5.8)
이상온도 · 물체접촉	4 (6.7)	1 (1.9)	1 (1.9)
끼임	0 (0.0)	4 (7.4)	1 (1.9)
기타(감전, 무너짐, 폭력행위 등)	5 (8.4)	10 (18.4)	8 (15.3)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원자료 중 본 연구팀에서 추출한 이미용 종사원의 산재건 수

3. 다양한 직업 건강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

- 이미용 종사원들은 유기용제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고객 응대로 인한 감정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유발 되고, 장시간 서서 일하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소화장해를 호소하고 있음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이미용 종사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 하기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02. 일반 현황



1. 이미용 종사원의 정의

■ 이미용 종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에 속하고 있는데,

- 이는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이·미용사, 피부 관리·화장 등 고객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동물 미용사, 패션코디네이터 등 기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함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 미용사 자격증

- 미용사 자격증은 일반 자격증과 피부 자격증으로 구분
-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 취득(2008년부터 시행)

미용사 분야 및 자격
취득자 수 (2012년)

구 분	분 야	자격 취득인원
미용사(일반)	머리, 화장, 네일 등	64,046명
미용사(피부)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117,395명

※ 출처 : 한국기술자격검정원(2013), 「자격 소개」

2. 이미용 종사원의 근무현황 및 특성

- 헤어분야와 네일분야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인아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 헤어분야 종사원은 1일 평균 9.6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3.1시간으로 나타남
 - 네일분야 종사원들은 1일 평균 9.0시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8.5시간으로 나타남
- 이미용 종사원이 주로 호소하는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 헤어분야 종사원은 위염 50.2%, 피부염·습진 48.6%, 안구건조증 38.0%, 빈혈 31.3%, 하지정맥류 29.4%, 불면증 26.8% 순
 - 네일분야 종사원은 위염 43.9%, 그 다음으로 안구건조증 43.1%, 피부염, 습진 37.9%, 빈혈 28.3%, 불면증 24.2%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 응답자의 근로시간

구 분	헤어분야	네일분야
1일 평균 근로시간	9.6 ± 1.6	9.0 ± 1.5
1주일 평균 근로시간	53.1 ± 19.6	48.5 ± 16.1

※ 출처 : 김인아 등(2012).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3.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이미용 종사원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이미용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에 의한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임

이미용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항 목	세부내용	관계법령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법 제5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고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 보고하여야 함	법 제10조 제1항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위 조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법 제11조 제1항 법 제72조 제4항의 1
안전표시 부착 등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위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법 제12조 법 제72조 제4항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이미용 종사원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하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등을 실시해야 함

항 목	세부내용
넘어짐 방지 (제3조)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작업장의 청결 (제4조)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 관리
휴게시설 (제79조)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공기정화 설비 가동 (제647조)	•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
사무실 공기 평가 (제649조)	•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 ·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 ·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유해요인조사 (제657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유해요인 조사방법 (제658조)	• 유해요인조사 하는 경우 근로자와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유해요인 조사결과 (제659조~제661조)	• 작업환경개선 • 통지 및 사후조치 • 근로자에게 유해성 주지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662조)	• 노사협의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 시행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66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기타 관련법령

-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조명, 오염물질, 공기관리 상태 등을 규정대로 관리해야 함

해당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



4. 안전보건실태²⁾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58.2%, 잘 제공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1.8%이었음

(단위 : 명, %)

안전보건정보 제공현황

항 목	구 분	빈도(%)
건강과 안전정보 제공여부	매우 잘 제공받는다	16 (11.9)
	잘 제공받는 편이다	62 (46.3)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43 (32.1)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13 (9.7)

안전시설 및 안전보건수칙

- 일하는 곳의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76.7%, 안전보건수칙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이 63.6%이었음

(단위 : 명, %)

안전시설 및 안전보건수칙

항 목	예	아니오
안전시설 및 설비	102 (76.7)	31 (23.3)
안전보건수칙 비치 여부	84 (63.6)	48 (36.4)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가 전체 22.0%(31명)이었음

2) '안전보건실태'는 본 연구팀이 2013년 7~8월까지 이미용 종사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결과임

03.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1.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 본 연구팀에서 분석한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60명이었으며, 2011년 54명, 2012년에는 52명이었음
- 이 중 사고성 재해가 91.7~96.2%를 차지하였고, 업무상질병이 3.8~8.3%를 차지하였음
- 사망자는 사고사망자와 업무상질병 사망자를 합쳐 연간 0~1명임

(단위 : 명, %)

이미용 종사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항 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사고성 재해	부 상	54 (98.2)	49 (98.0)	50 (100)
	사고 사망	1 (1.8)	1 (2.0)	0 (0.0)
	소 계	55 (91.7)	50 (92.6)	50 (96.2)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 이환	5 (100)	4 (100)	2 (100)
	업무상질병 사망	0 (0)	0 (0)	0 (0)
	소 계	5 (8.3)	4 (7.4)	2 (3.8)
계		60 (100)	54 (100)	52 (100)

※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 원자료 중 본 연구팀에서 추출한 이미용 종사원의 자료

- 최근 3년간 이미용 종사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근골격계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미용 종사원의
업무상 질병의 종류

항 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업무상 질병	직업병(기타)	0 (0.0)	1 (25.0)	1 (50.0)
	근골격계질환	2 (40.0)	1 (25.0)	1 (50.0)
	작업관련성질환(기타)	3 (60.0)	2 (50.0)	0 (0.0)
계		5 (100)	4 (100)	2 (100)

2.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현황(2012년)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는 2012년에 2,375건으로, 전체 산업 재해자 수 92,256건의 2.57%를 차지함
 - 산업재해율은 1.16%, 사망천인율은 0.20%로, 전체 산업재해율 0.59%와 사망천인율 0.12%보다 높음

구 분	전 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 수(개소)	1,825,296	15,882
근로자 수(명)	15,548,423	205,280
총 재해자 수(명)	92,256	2,375
재해율(%)	0.59	1.16
사망자(명)	1,864	41
사망천인율(%)	0.12	0.20

※ 고용노동부(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 2012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 넘어짐 686명(28.9%), 떨어짐 365명(15.4%), 부딪힘 201명(8.5%) 순으로 발생하였음
 - 업무상질병은 207명(8.7%)이었음

기타의 각종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2012년 기준)

발생형태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절단 · 베임 · 찢림	업무상질병	사업장외 교통사고
명	686	365	201	174	207	122
%	28.9	15.4	8.5	7.3	8.7	5.1
맞음	끼임	무리한동작	깔림	체육행사	기타	총계
143	170	114	61	28	109	2,375
6.0	7.1	4.8	2.6	1.0	4.6	100

※ 고용노동부(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3. 산업재해 사례

■ 이미용 종사원에게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 사례

구 분	발생 과정	예방 대책
근골격계 질환 및 정맥질환	고객의 헤어, 바디 관리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중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을 느낌	- 작업 전·후 스트레칭 -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 착용 - 의자 비치, 휴식시간 부여 등 안전수칙 이행 및 준수
손상 및 안전사고	네일 아트 작업 중 각질제거기로 고객의 발 관리 시 잘못 사용하여 자신의 손 살점을 제거함	- 날카로운 미용도구 취급과 관련된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 미용도구의 정기적인 점검
유해인자로 인한 자극증상	네일 아트 작업 중 글루드라이 사용 시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한동안 많이 나고 저녁 세안 후에는 피부가 빨갛게 올라옴	- 화학약품 사용 시 보호구 착용 - 화학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숙지 - 환기장치 가동 등 작업장의 환기 철저



04. 이미용 종사원의 유해 · 위험요인

1.

작업환경 요인

화학물질 사용

- 헤어분야와 네일분야에서 쓰이는 유기용제로 인해 인체 각 부분에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유기용제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 시 그 축적현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음

종 류	인체에 미치는 증상
염색약 (파라 페닐렌 디아민 PPDA : p-Phenylene diamine)	•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피부에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 • 방광암 발생 우려 • 알러지, 물집, 통증 유발
파마약, 제모제 (치오글리콜산 : Thioglycolic acid)	• 증기 흡입 시 눈, 코, 피부 점막 조직 파괴 • 고농도 흡입 시 기관지염, 화학성 폐렴, 폐수종 발생 • 쓰라림, 호흡곤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발생
중화제 (과산화수소 : Hydrogen peroxide)	• 다량 폭로 시 눈, 코, 목 부위에 심한 자극 • 피부 접촉 시 쓰리고 따가운 고통, 피부가 붉어짐
아세톤(Acetone)	• 조혈장애, 빈혈, 백혈병(만성장애) • 눈 자극, 피부자극(갈라짐, 건조증) • 졸음과 현기증
화장품 배합제 (이소프로필 알콜 IPA : Isopropyl alcohol)	• 두통, 어지러움, 구토, 혼수상태 등 (중추신경계) • 눈에 들어가면 각막 침투하여 시력장애 유발 • 고농도 폭로 시 눈, 코, 목 자극 • 피부암 발생 우려

※ 환경부(2007), 「유해화학물질편람」

 현장의 소리

- ① 화학물질은 늘 달고 다녀요. 손에 화학물질로 인한 갈라짐 이런 것들은 계속 달고 산다고 봐요.
- ② 원래 화학물질 다룰 때는 마스크하고 하라는 지침은 있어요. 근데, 저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손님은 안 좋은 물질 자기네만 마스크하고, 나는? 이럴꺼 아니예요. 그래서 잘 안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내 몸 생각해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보호장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3



이미용 종사원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1



이미용 종사원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2



이미용 종사원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3

‘현장의 소리’는 본 연구팀이 2013년 7~8월 이미용 종사원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2. 작업조건 요인

직무스트레스

- 적절한 휴식없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기 쉬움
-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및 심혈관계 장애, 심장병, 우울증, 피로, 수면 부족 및 신체 전반적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의 소리

스트레스 많죠. 손님들이 작은 거에도 얼마나 뭐라 하는데요. 그 때마다 싸울수 있나요?

감정노동

- 이미용 종사원은 업무 종사 시간 내내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감정노동이 많이 발생함



현장의 소리

저는 동료 미용사 중에 손님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일년에 한 두 번씩? 그래도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미용사 일을 계속해요. 억울하고, 열 받아도 장사하려면 참고 해야지. 그래서 끝나면, 같은 미용사끼리 술 마시고, 담배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렇게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풀 방법도 없고, 느는 것은 술과 담배죠.

불규칙한 식사시간

- 이미용 종사원들은 지속적인 고객응대로 인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관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장의 소리

저는 그 전에 큰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개업한 다음에도 그때 습관이 돼서 밥 먹는게 아주 빨리 먹어요. 밥 먹을 때면 늘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뭐 위장병은 계속 있죠.

장시간 근무

-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대에 업무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현장의 소리

교대근무는 없어도 장시간 근무는 있죠. 아침 일찍 먹고, 점심은 먹는 등 마는 등 이에요. 저녁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미용사들은 위장병은 늘 달고 살아요. 하루 한끼만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못 먹을 때도 있고, 손님이 있으면 먹던 것도 내려놔야죠.

서서 일하는 작업자세

- 이미용 종사원은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서 일하는 작업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허벅지/다리의 통증, 족저근막염,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 하지정맥류, 다리부종, 근육경련 등 순환기질환 발생
 - 조산, 유산,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에 부정적 영향

3. 건강문제 요인 근골격계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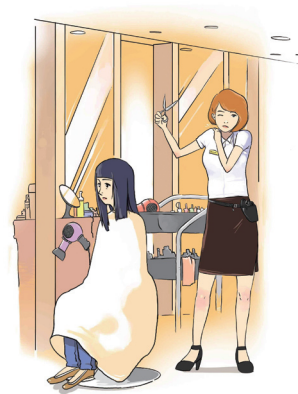
- 미용업 종사원의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 허리 등 신체에 통증이 발생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 미용작업으로 인해 목, 허리, 다리, 팔, 손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무리한 동작



근골격계질환 1



근골격계질환 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2011). 「미용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현장의
소리**

삼푸하거나 이럴 때는 허리도 비틀게 되고, 손목으로 머리도 들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러 주잖아요. 손가락 마디 마디가 아파요. 미용사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4



샴푸하는 업무에서 부적절한 자세



현장의 소리

미용사를 나이 50 넘어서 계속하는 사람들은 허리나 어깨가 안 아픈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어깨나 이런 데가 계속 아파요. 계속 자세가 옆으로 돌리고, 옆드리고, 비뚤게 하고, 나름대로 바른 자세 취하려고 높이가 안 맞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별로 도움은 안되는 것 같아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 작업시간동안 통증 및 피로감 • 하룻밤 지나 아침이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저하 없음 •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 하룻밤 지나도 통증이 지속 • 작업능력 저하 •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 하루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에도 어려움과 통증동반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06),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종류(Sheet형 교재)」

피부질환

- 미용업에서 작업관련 접촉성 피부질환의 증상은 건조, 발적, 가려움, 피부박리, 갈라짐, 통증 등이 있음
 - 접촉성 피부질환은 전염성은 없으며,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나눌 수 있음
 -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염색 업무 시 강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빈번한 습한 작업 또는 샴푸로 머리감기 작업 시 점차적으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샴푸나 염색약과 같은 물질에 노출 시 즉시 발생하거나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음



염 색

6



샴 푸

하지정맥류

- 이미용 종사원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함으로써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함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 발바닥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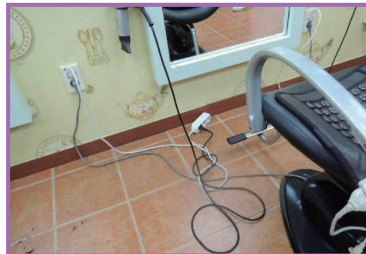
※ 안전보건공단(2012).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 OSEN 뉴스(2011-04-01)

4. 사고관련 요인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 미용실 바닥의 전선, 의자다리 등에 걸리거나 흘려진 물, 머리카락 등에 미끄러져 다치게 됨
 - 미용업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넘어짐이 재해의 38%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단·베임·찔림이 17%, 부딪힘이 9%이었음
 - 절단·베임·찔림은 미용도구인 가위, 칼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 신체를 베이거나 찔림. 부딪힘은 미용실내 이동, 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출입문, 구조물 등과 부딪혀 발생함

7



바닥 전선

8



머리카락

9



미용도구



현장의
소리

베이는 것은 일상다반사죠. 자잘하게 베이는 일은 많아요. 전기사고도 가끔 일어나죠. 전기 쓸 일이 많으니까요.

화상

- 화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 드라이기, 고대기, 파마기 등 고온의 기기나 뜨거운 물을 취급하다가 주로 발생함



화상 발생 우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2011). 「미용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05. 유해 · 위험요인 관리방안



1. **작업환경 관리**

화학적 유해인자 관리방안

- 퍼머약,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매니큐어, 아세톤 등 화학물질은 별도로 보관함
- 화학물질 또는 약품에 대하여 라벨을 붙여 관리함
-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함
- 네일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화학물질을 다루고자 할 때나 튀거나 뿌려지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호흡보호구(마스크), 눈 보호구(보안경), 피부보호구(보호장갑, 앞치마, 토시)등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보안경, 안면보호대	먼지, 화학물질, 가스와 증기 등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증기, 가스, 먼지 등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이다.
안전장갑, 손목보호대, 토시	화학물질, 피부감염, 오염, 고온, 저온에 대하여 손과 팔을 보호할 수 있다.
안전화	미용업종에서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쿠션이 좋은 안전화의 경우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치마	화학물질이 전신으로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이미용 종사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함
- 이미용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파마약, 염색약, 중화제 등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을 알려주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예시

[illegible]

개인위생 점검 및 정리 정돈

- 작업 종료 후 피부에 묻은 악품을 깨끗이 닦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함
- 작업복을 자주 세탁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일하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폭로를 줄이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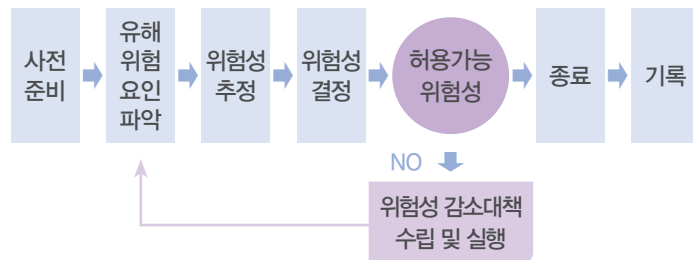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①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실시목적 · 방법, 담당자 · 책임자 역할, 연간계획 · 시기,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작성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파악
- ③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 추정
- ④ 추정한 위험성의 허용가능 여부 결정 :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가능 기준을 비교하여 허용 가능여부 판단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⑥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각종 자료 및 정보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3년 이상 보존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2013).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지침서」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참조

2. **작업조건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 조직적 관리방안
 - 이미용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견교환 기회 마련
 - 경력개발을 위해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개인적 관리방안
 -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
 -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서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
 -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 마련
 - 생활습관개선
 - 규칙적 운동
 - 올바른 식습관 유지
 - 하루 7~8시간의 쾌적한 수면시간 유지
 - 카페인 많이 든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의 섭취 감소

직무스트레스
증상완화법

방 법	내 용
자기관찰	원인이 된 스트레스를 알아내기 위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양상을 일일 행동기록지에 적는 것
근육이완법	근육에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단계적인 훈련 실시
복식호흡	양손을 아랫배에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심(코나 목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이용하여 숨을 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긍정적인 생각 갖기
자신의 감정 털어놓기	화가 났을 때 마음에 쌓아 두지 않고,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해서 자기감정 표출
자기 주장훈련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명확히 주장하는 방법 훈련

※ 정혜선 등(2011), 「여성근로자의 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감정노동 관리

- 고객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이미용 종사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교육

감정노동 관리

방 법	내 용
적응하기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하며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
일과 나와의 분리	'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하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
스스로 격려하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 암시나 혼잣말 하기
분노 조절 훈련	심호흡, 자극 피하기, 관심 바꾸기, 용서를 통한 해소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
생각 멈추기	'그만' 하며 생각을 멈추거나 긍정적으로 생각

※ 정혜선 등(2012),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불규칙한 식사시간 관리

- 교대로 순서를 정하여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량의 식사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공복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가 식사를 할 경우 배고픔으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됨
- 업무시간에 쫓겨 급히 식사를 할 경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의 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장시간 근무 관리

- 피로와 신체능력 회복을 위해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함
- 카페인과 술은 섭취하지 않도록 함
-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실시함
-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
- 휴식은 짧고 자주하는 것이 길고 덜 자주 하는 것 보다 효과적임

서서 일하는 작업자세 관리

- 의자 활용
 - 높낮이 조절의자 또는 입좌식 의자 비치
 - 필요시 피로예방 매트, 발받침대 등 적절한 보조 도구 사용



좌식의자



입좌식 의자



발걸이

※ 안전보건공단(2012).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

서서할 수 있는
운동

발목운동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10회 반복하세요.



다리운동

양손을 허리에 대고 왼발을 발 받침대 혹은 상자
위에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좌우 교대 실시)



허리운동

손을 허리에 대고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좌우 교대 실시)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11).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서서하는 작업 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을 위해
체크하세요!

내 용	결 과
1. 적절한 보호 매트 없이 딱딱한 바닥에 서서 일하는가?	
2. 신발은 굽이 높거나 밑창이 얇거나 발 모양을 변형시키는 형태인가?	
3. 작업반경이 정상 작업영역을 벗어나는가?	
4. 부품, 공구 등이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배열돼 있는가?	
5. 작업공간이 좁거나 움직임이 불편한가?	
6. 휴식이나 이동, 작업순환 없이 10분 이상 서서 일하는가?	
7. 굽히거나 비틀기, 뺀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일하는가?	
8.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고정된 작업대를 사용하는가?	
9. 작업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은가?	
10. 무거운 옷을 입고 일하는가?	

※ 안전보건공단(2012).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가이드」



3. 건강문제 관리 **근골격계질환 관리**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8호) 확인
- 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유해도 평가로 구성

※ KOSHA GUIDE(H-9-2011), 「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

조직구성	교육훈련	유해요인 관리
•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 역할분장	• 교육대상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지침	• 유해요인 조사 • 유해요인 개선방법 • 개선계획서 작성/시행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 평가	문서기록과 보존
• 증상호소자 관리 • 질환자 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 평가시기 • 평가지표 • 프로그램 보완	• 보존대상 문서 • 보존기간

※ KOSHA GUIDE(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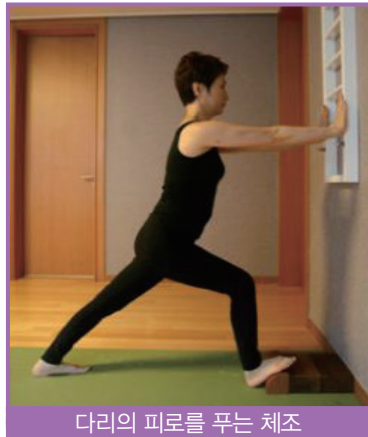
■ 의학적 및 관리적 대책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환경개선활동 등 사업장 별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빠른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 수행
-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작업일정 및 속도 조절, 회복시간 제공, 작업 공간 및 장비의 주기적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적 대책 시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 등 실시

※ KOSHA GUIDE(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방법
-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해당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다리의 피로를 푸는 체조

피부질환 관리

- 보호구 착용
 - 팀 방지 앞치마, 불투과성의 장갑과 토시 착용
 -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물질에 대한 호흡보호구 착용
 - 장갑은 라텍스가 없는 저 알레르기성 장갑 사용
-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 사용
 - 규칙적으로 핸드크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주위에 비치
 - 핸드크림은 손을 보습하는 것으로 손의 건조와 균열을 예방함
- 정기적인 관리
 - 정기적으로 피부염이 발생하는지 체크하고, 피부염이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보건조치를 즉시 시행
 - 유기용제의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작업이 끝날 때마다, 15초 이상 손 씻기 실시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수칙

1. 머리를 감거나 염색을 할 때 1회용 비 라텍스성 장갑 착용
2. 부드러운 면이나 종이 수건으로 항상 손을 전체적으로 말림
3. 손을 씻은 후 뿐만 아니라 작업 전 · 후에도 항상 보습제 사용
4. 고객 한 사람당 1개의 장갑 사용
5. 피부염의 조기증상에 대한 정기적으로 피부검사 실시

※ 출처 : 김인아 등 (2012), 「미용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건강영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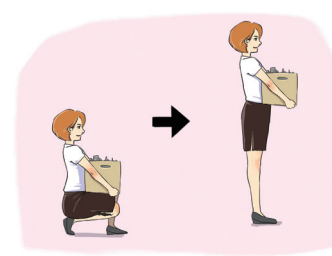
4. 사고요인 관리 사고 예방

- 작업과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제거할 때 필요한 이미용 종사원의 역할 교육
 - 이미용 종사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 설명
- 안전보건수칙 준수 요령

안전보건수칙	행동요령
보행 전 장애물 확인 및 정리정돈	 제한된 실내 공간 내의 출입문, 의자 다리 등 장애물을 확인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미용 도구, 전선 등 정리
수시 청소로 바닥안전 확보	 바닥에 샴푸액, 물기, 머리카락을 밟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와 정리 정돈 실시

안전보건수칙	행동요령
날카로운 미용 도구 사용 시 배임 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가위, 칼 등 날카로운 미용도구를 취급 중 베이거나 찔릴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근로자 교육 실시
뜨거운 미용도구 취급 시 화상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고대기, 아이롱 파마기, 드라이기 등 고온 미용도구와 뜨거운 물 취급 시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감전위험(머리감김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전기기구 등 사용)이나 전기기구의 관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정기 점검 및 안전수칙 이행

안전보건수칙	행동요령
파마액, 염색제 등 취급 전 유해성 숙지 및 보호 장갑 착용	 파마액, 염색제 등 취급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보호 장갑 착용
파마액, 염색제 등 화학 물질 취급 시 환기 철저	 파마액, 염색제, 왁스 등 화학물질에 자주 접촉되거나 과다 노출 시 두통, 점막 통증,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장치(FAN) 가동 등 환기 철저

안전보건수칙	행동요령
작업 전 · 후 스트레칭 실시	 불안전한 작업자세 및 도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통증 완화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 실시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 습관화	 미용재료, 기구 등 중량물을 이동 · 운반 시 허리를 펴고 다리 힘을 이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습관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의 경우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 착용, 의자비치, 휴식시간 부여 등 안전수칙 이행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1), 「재해예방 안전보건 수칙: Safty & Health 10-10」

화 재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주변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소방기관 신고(119)
- 위험물, 가연성 물질로 넘어짐 되지 않도록 방화벽 형성
- 소화기 및 소방전을 이용하여 자체 진화작업 실시
- 입과 코에 물수건을 이용하여 유독가스 흡입을 막고 대피
- 내부에 갇혔을 경우 창문을 통해 위치를 알리고, 구조에 대한 신념을 가질 것

■ 소화기 사용방법

- 평소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 하도록 함
- 소화기를 바로 세워 손으로 잡음
- 손잡이 부분에 고정된 안전핀을 당겨 뽑음
- 소화기 노즐을 불이 난 부분을 향함
- 사용자는 불로부터 1~5미터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
-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상부 손잡이를 강하게 누름
- 주위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끌고루 분사
- 불을 다 끈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

■ 옥내소화전 사용법

- 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끌고 감
- 화전함 내에 있는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
- 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것은 ON(적색) 스위치를 누름
- 불이 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방수

「이미용 종사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구 분	번 호	제 목
고용 노동부 예규	제37호(2012)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0호(2011)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3-49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13-3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013-32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13-6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013-3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2-63호	산업안전 · 보건교육규정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012-13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2011-38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부록2

「이미용 종사원」 관련 KOSHA GUIDE

구 분	번 호	제 목
KOSHA GUIDE	H-4-2012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H-71-2012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지침
	H-82-2012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지침
	M-39-2012	작업장내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P-51-2012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P-58-2012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X-27-2012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
	X-30-2012	사업장 화재 및 응급서비스에 관한 리스크 관리지침
	W-6-2012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평가 지침
	W-14-2012	경고표지 작성 지침
	W-15-201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H-42-201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보호용 장갑
	H-51-2011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
	G-62-2011	사업장의 일반안전규칙에 관한 지침
	G-72-2011	근로자 안전보건 상담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로 들어가 상단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음

「이미용 종사원」 유관단체 명단

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한국피부미용사 중앙회	서울시 서초구 잠원 7-8 은행빌딩 B1	www. beuinfo.co.kr	(02) 586-7342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5-5 미용회관 5층	www. beautyassn.or.kr	(02) 585-3351
대한가발협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07-11 덕암빌딩 3층	www. iawig.org	(02) 6396-3388
한국메이크업협회 한국네일협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7-15번지 금강빌딩 2층	www. kmakeup.co.kr	(02) 515-1485

연구진

- 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정혜선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연구원 : 이종은 (교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연구보조원 : 최은희 (강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김경진 (박사과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지선 (석사과정,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현주 (박사과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정윤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기간

2013. 4. ~ 12.

「이미용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13년 12월
- 발행인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
-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주소 : (403-711) 인천 부평구 구산동 기능대학길 25
- 전화 : (02) 2258-7368, (032) 5100-719
- Homepage : <http://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직업건강 ➡ 근로자 건강증진 ➡ 건강증진 자료실